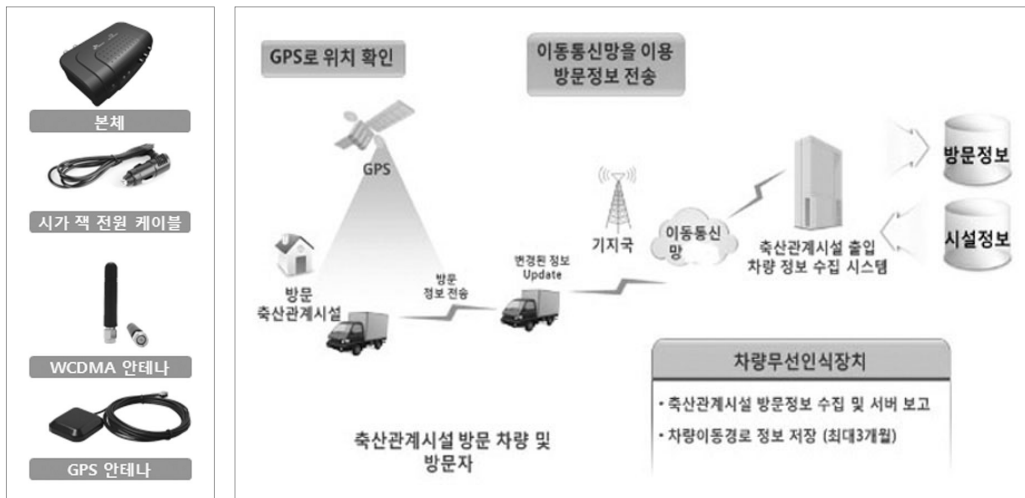


디지털가축방역시스템 구축 · 운영

지난 '12년 9월 7일부터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등록하고 차량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수집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2년까지 GPS가 보급되었으며 '13년 1월 1일부터 GPS장착이 의무화되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적발시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차량등록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정보를 목적이 외로 사용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히면서, 동제가 정착되면 가축전염병 발생시,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질병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축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바, 축산농가 등 제도이행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수집된 정보는 차량의 GPS단말기에 3개월(90일) 보관된 후 자동적으로 삭제됨)

본지는 축산차량등록제 내용을 요약·정리 하였다. -편집자주-



차량무선인식장치 (GPS단말기)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 자동 수집체계도

등록 방법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차량의 운전자(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대표 운전자 등록)를 주소지 관할 시군벤구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대상 차량 중 가축운반, 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주기적 방문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농장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상),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부화장, 집하장 등)
준수 사항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장치와 차량등록증(차량용 스티커)를 차량의 앞쪽에 장착해야 하며,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되며,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 「차량등록제 운영센터(1544-6046)」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재 수단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준수사항 위반의무 적발,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은 '13. 1. 1일부터 적용)

축산차량등록제 Q&A

■ 통신비 등 지원

1. 통신비 및 단말기 등에 대한 가격 및 지원은?(부가세 포함)

- 통신비는 월 9,900원(단말기 포함)이며, 약정기간은 3년, 무상A/S 18개월
- 정부에서는 통신비 50%를 지원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 중

■ 차량등록 관련

2. 축산농장의 모든 차량은 등록해야 하는지요? 또한 가축사육시설 300㎡이하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축산차량등록제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 축산농장의 모든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축산관계시설(가축사육시설 300㎡, 집유장, 사료제조장, 도축장 등)에 가축·사

료·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에 한해서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함

3.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

-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교육수료증(그 밖의 등록차량의 경우에는 등록 후 1년 내에 교육수료증 제출 가능)를 제출해야 함.

- 단, 등록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주기적방문차량과 그밖의 등록차량의 차이는?

-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원유·동물약품



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 가축운반, 진료 등의 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이상인 사업자의 경우를 말함.

○ 그밖의 등록 차량 : 축산농장 소유 차량 등 주기적방문 차량을 제외한 차량

- 그밖의 등록차량은 축산농장 소유차량, 공공기관의 소유차량 등이 해당됨.

5. 차량 두 대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경우 두 대 차량 모두 등록해야 하는지?

○ 축산차량등록제는 차량을 기준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차량이면 등록해야함.

6. 농장에서 1년에 1~2회 정도 도축장 등에 가축운반을 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등록과 GPS단말기를 장착 해야 하는지요?

○ 축산차량 등록 기준에 축산관계시설의 출입 횟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연1회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도 등록을 해야함.

■ 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 및 운행방법

7. 축산차량등록제 신고와 이통사에 차량무선 인식장치 가입을 위한 방법 및 절차는?

○ 「축산차량등록제 신고서」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는 해당 시군구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군구는 가입신청서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또는 이

동통신사 지정대리점으로 FAX 송부 → 이통사에서는 GPS단말기를 택배로 배송

8. 방문정보가 농장방문 2~5분 후 전송된다면 농장방문후 바로 시동을 끌 수 없는지요?

○ 축산시설 출입후 차량운전자는 시동을 끌 수 있으며, 시동이 정지되면 단말기 자체 배터리에 의하여 10분간 작동되면서 2~5분후 축산시설 방문정보를 검역검사본부 서버에 전송함.

9. 시범운영 500대는 기존 단말기 계속 사용 해도 되는지?

○ '11.12월부터 시범운영 단말기를 500대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단말기는 등록시 모두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예정 임.

■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10. 출입정보, 이동경로 수집 등은 사생활 침해 아닌지요?

○ 법령에서 출입정보 및 이동경로정보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음.

○ 축산시설에 출입한 정보만 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간 수집하고 축산관계시설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이동경로 정보는 GPS단말기 자체내에 3개월(90일)분만 보관하며 이후의 자료는 자동 삭제됨.

※ 개인정보 유출 등 수집된 정보를 목적이외로 사용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양계